2013. 10. 8(화),14:00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#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##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(안)

본 계획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와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항에 근거하여 작성한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임

#### 1. 감사의 목적

2013년도 행정 사무감는「지방자치법」제41조,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·개선토록 하는 한편, 이를 통해 2014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.

#### 2. 감사대상기관 및 일정, 감사장소

#### 가. 감사 대상기관

구 분	대 상 기 관	
당연 기관	충청북도 본청 및 직속기관(사업소 포함)중 산업경제위 소관부서	
	※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농업기술원, 경제자유구역청	
본 회 의 승인기관	출자출연기관 중 산업경제위 소관  ※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,  충북신용보증재단, 충북테크노파크  ※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, 회계, 재산에 한함.	

나. 감사 일정 : 2013. 11. 13(수)~11. 24(일)·12일간

감 사 일 자		대 상 기 관	감사 장소	비고
11. 13(수)	10:00	경제통상국	산경위회의실	
11. 14(목)	10:00	농정국 "		
11. 15(금)	10:00	도정현장 방문		
11. 18(월)	10:00	경제자유구역청	"	
	14:00	농업기술원	"	
11. 19(화)	10:00	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	"	
	14:00	신용보증재단	"	
11. 20(宁)	10:00	테크노파크 "		
11. 21(목)	10:00	경제통상국	"	
	14:00	농정국, 농업기술원	산경위회의실	
11. 22(금) 11. 25(월)	10:00	· 감사결과 종합검토 ·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		

### 3. 감사위원회 편성

위 원 장	위 원	감 사 보 조	비고
정 헌	황 규 철	수석전문위원 나기성	
	권 기 수	전 문 위 원 유 지 영	
	김 도 경	   행정 6급  김 주 희	
	유 완 백		
	윤 성 옥	행정 7급 민근 영	
	이 수 완	속기사 2명	

※ 감사반은 위원회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함

#### 4. 주요감사 사항

- 2013년도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 미흡한 사례
-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
-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실태
-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
-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#### 5. 감사보고, 서류제출 및 관계자 출석요구

#### 가. 보고요구

-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(업무계획과 그 실적)
  - ※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포함(2013. 10월말 기준, 사업별 목별작성)
-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·촉구,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9대 의회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
  - ※ 위원회별 구분 합철하여 별책으로 작성(완료분 포함)

#### 나. 감사자료 제출요구

○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하되 11. 2일까지 관계국(원)별로 30부씩 작성 제출하고 출자출연재단은 별책 포함 제출

※ 별첨: 제출자료 목록

#### 다.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: 별첨

○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 진술 요구는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의함

#### 6. 감사 요령

#### 가. 감사방법

○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·답변과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함.

#### 나. 선서요령

- 선서는 피 감사 관계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
- 국장, 원장, 청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하고 선 서후 선서에 참여한 기타 공무원 및 법인관계자는 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
-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(감사반장)만이 기립 하 여 받도록 함.
- 위원장(감사반장)은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 을 설명

#### 다. 감사진행 순서

① 감사개시 선언

② 감사반장 인사

③ 증인선서

- ④ 업무현황 보고
- ⑤ 질의 및 답변 (필요시 현지확인 병행) ⑥ 감사결과 강평
- ⑦ 감사종료 선언

#### 라. 감사보고서 작성

#### ○ 방침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
-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, 기간,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, 촉구 및 건의사항,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

#### ○ 작성요령

-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(서식)를 사전에 배부
- 감사 실시 직후에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감사반장(위원장)에게 제출
- 감사위원 의견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(안)를 작성, 상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

#### 7. 기타사항

○ 본 계획서에 나타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 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